

1. 개정이유

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교육여건 및 시·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일정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(안 제4조)

- 1)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·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 필요

나. 다음 연도 기준경비 통보 기한을 매년 8월 31일까지로 기존(매년 9월 30일까지)보다 1개월 앞당김(안 제8조제1항)

- 1) 시·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고려

다. 법령문 정비(안 제9조)

- 1) 상위 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 용어인 “재정투자심사”로 법령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5. 2. ~ 6. 11. 예정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완료(비대상)

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재산수입과 수업료”를 “재산수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9월 30일”을 “8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재정투·융자심사”를 “재정투자심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입·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조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체수입) 시·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<u>재산수입과 수업료</u> 등의 수입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,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4조(자체수입) ----- ----- ----- <u>재산수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(기준경비)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·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<u>9월 30일</u> 까지 시·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8조(기준경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8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투자사업비)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·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<u>재정투·융자심사</u>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	제9조(투자사업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</u> <u>정투자심사</u> ----- ----- -----.